

#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[정현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87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의자 : 정현미, 한근수, 원주영,  
이정애, 한동훈, 박은경

## 1. 제안 이유

마을공동체의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,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다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라.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(안 제6조)

마. 우수콘텐츠 활용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5. 관련법령 :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

##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을공동체”란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.
2. “마을공동체 미디어”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의 영상, 음성, 인쇄, 신문, 방송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.
3. “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”이란 주민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, 발표,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,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.
4. “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”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방안
3.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5조(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, 실습, 매체 제작, 발표 등의 활동
2.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
3.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특정 정당·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7조(우수콘텐츠의 활용)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)
- 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 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기존 ‘남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’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새로운 의무적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음.

※ 2026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예산 : 234백만원(도비 25, 시비 209)

- 제6조는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 편성된 ‘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수당’ 예산 범위에서 운영 가능하여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.

※ 2026년도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수당 예산 : 10백만원(시비)

- 또한,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는 ‘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계획’ 및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비용 산정이 곤란함.

### 4. 작성자

행정국 자치협력과 최진희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☑ 「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」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3. “마을공동체”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.
4. (생략)

제6조(종합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(이하 “종합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
3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4.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사업에 따른 심의, 자문 및 주민 교육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
2.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자문 및 주민 교육
3.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
4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